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596p	문제-본문	(3) 옥저 · 동예 : 동계에서는 습락 상호 간에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책화라 하여 노비나 우마 등으로 배상하였다. (4) 삼한 : 제국은 일찍부터 분리되어 즉각 외에 제사권을 장악한 '천군'이란 제사장이 별도로 있었으며, '소도'라는 신성 특별구역이 존재하였다. ❖ 삼국시대 (1) 공통 : 형벌제도는 응보행주의에 기초를 둔 복수형 시대로 형벌의 종류가 사형 · 유행 · 장형 · 재산형 등으로 다양해졌고, 감옥제도가 정비되는 등 국가공권력이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, 감옥 명칭으로는 뇌옥 · 영어 · 향옥 · 수옥 등이 사용하였다. (2) 고구려(우마도살죄) : 모반자 · 패전자 · 투항자 · 살인자 · 궤탈자는 사형에 처하고, 절도죄는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며, 특히 모반자는 가혹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하고,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, 재산을 몰수하였다. (3) 백제 : 살인자 · 반역자 · 패군자는 사형에 처했으며, 부인이 간음하면 남편 집의 종으로 삼게 하고, 절도죄는 유행 또는 3배의 배상을 하게 하였으나, 고구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었고, 사형의 경우는 옥심제도를 실시하였다. (4) 신라(배제와 고구려의 사이) : 형벌을 관장하는 기관은 이방부였는데 신라 말까지 존속하였다. ❖ 고려시대(정형주의의 확립) (1) 성종 때에 이르러 3성(중서성 · 문하성 · 상서성) 6부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상서성 아래에 6부를 두고, 6부 가운데 행형을 관장하는 행부를 두었으며, 형부 아래에 형육을 담당하는 전속서와 노비의 부죄과 이에 송사를 담당하는 상서도관을 두었다. (2) 형벌은 태 · 장 · 도 · 유 · 사의 5종이, 부가형으로는 삼문, 경면, 속면, 가재몰수 및 노비몰입이 있다. (3) 감옥제도 ① 전옥서 : 최초의 독립행형기관으로 종래 옥, 뇌옥, 영이라고 불리던 구금시설이 전속서라는 명칭으로 정비하였으며 옥수만을 전담하는 유일한 중앙관서로 수도인 개경에만 설치하였다. ② 가옥 : 광종 때 노비법 개정과정에서 급증하는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속서 외에 임시로 설치한 감옥으로 주로 노예수용을 담당하였다. ③ 사옥 : 지방관아에서 직접 관장하는 부설감옥이다. ④ 출형제도 : 고려시대에도 오늘날의 특별자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였는데(조선시대 보방도로 발전) 사형의 죄를 벌한 자로 옥중에 있을 때 학역 이상이 아니면 부모 · 남편 · 조부모상을 당한 자에게 7일, 유행 · 도형은 30일간 출옥하게 하고, 모종인을 세우도록 하였다. 또한 옥중에 596 교정직 공무원 한다	보방 → 보방 오타 수정
		수정 사유	오타 수정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